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위탁생규정」상 결격사유가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어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대상자가 누락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군위탁생의 결격사유(안 제5조제1호) 변경

- 1)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일부 범죄에 대해서 (민간) 법원이 재판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군위탁생의 결격사유를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서 “군복무 중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군사법원”을 “군복무 중 군사법원 또는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1. <u>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u> 받은 자 2. ~ 5. (생 략)	제5조(결격사유) ----- ----- -----. 1. <u>군복무 중 군사법원 또는</u> <u>법원--</u> 2.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연 락 처	(02) 748 - 5186